



2023. 9. 1.

국회입법조사처 | NARS 현장실태조사 | 제2호

# 지속가능한 자립: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허민숙 | 행정서비스 실태조사 T/F(보건복지여성팀)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NARS 현장실태조사 제2호

---

# 지속가능한 자립: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

허민숙 | 행정서비스 실태조사 T/F  
(보건복지여성팀)

2023. 9. 1.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NARS 현장실태조사는 정부정책의 전달체계와 성과에 대한 현장 실태를 조사하고 평가하는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가 국회의 위원회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입법·정책 현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3 및 「국회입법조사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심의절차를 거쳐 발간(2023. 9. 1.)되었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은 국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분석 결과입니다.

본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서비스 실태조사 T/F』 활동의 결과물임

간사: 김여라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장)

팀원: 이정진(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

임준배(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

최정민(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

김경민(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배성희(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보)

정준화(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권성훈(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김나정(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보)

허민숙(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 요 약

-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양육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되어 자립하는 청년을 말하며, 법률 개정으로 만 24세까지 시설에 머무를 수 있음
  - 한해 약 2천여 명 수준으로 홀로서기를 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지원 제도를 마련하였음
  - 대표적인 지원 제도인 자립정착금은 1회 1,500만 원 가량이 지급되고, 보호종료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40만 원의 자립수당이 매월 지급됨
  - 그 외 주거지원, 의료비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공제, 취업지원, 정신건강 지원 등이 마련되어 있음
- 전국 17개 시·도에 마련된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고 있음
  - 자립준비청년이 정주하는 곳에서 보호종료 5년 동안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고, 일부 대상자에게는 자립지원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2023년 7월 기준 11,403명의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해 161명의 자립지원전담인력이 배치되어 1인당 약 71명의 청년 지원을 담당하고 있음
- 현장 점검 결과 각 부문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가 관찰됨
  - 보호종료 후 매년 1회 자립수준평가를 하는 것이 기본 사후관리인데, 연락이 되지 않는 비율이 20.2%에 이르고 있음
  - 특히 가정위탁 자립준비청년의 연락두절률은 30% 가까이 이르고 있어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면이 있음

- 자립준비청년들 스스로도 자립을 위해서는 취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으나, 실제 정부가 마련한 일반적인 취업지원 제도가 자립준비청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취업 및 진학을 위해서는 자립준비청년의 건강한 정신과 마음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많은 경우 일상적인 우울과 무기력에 시달리는 청년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한 지원 제도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관찰됨
-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해서는 자립지원전담인력의 역할이 중요하나, 1인이 담당하고 있는 인원이 적지 않고, 전담인력에 대한 처우도 좋지 않아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정부의 자립수당 등을 청년의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도 확인되는데, 주로 가정위탁 자립준비청년들이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점이 확인됨
- 가족과 같은 안전망과 보호망이 부재한 청년들의 경우 일터에서의 성(性)적 안전에 위협을 겪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에 대한 교육과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정확한 규모가 파악되고 있지 않으나 경계선 지능에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들에 대한 보다 세밀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 아직 성년에 이르지 못한 미성년 자립준비청년들은 법적 권한이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를 제안함
  - 자립준비청년들은 단순히 전담기관의 연락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지만, 휴대



폰 요금 미납 등 생활고의 사유로 연락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지원센터, 지자체, 경찰과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연락두절 청년들을 발굴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연락두절률이 가장 높은 가정위탁 자립준비청년 중에는 친인척 등이 고의로 연락을 단절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청년을 직접 대상으로 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고, 국가 지원 제도 등을 명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음
- 경계선 지능 자립준비청년을 담당하는 인력을 별도로 배치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립준비전담인력이 경계선 지능 자립준비청년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갖추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전담인력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는 인력의 잦은 이직을 촉발할 수 있는 점, 전담인력은 국가와 정부가 마련한 지원 제도를 자립준비청년에게 안내하고 이끄는 역할을 한다는 점, 청년들과 직접 소통한다는 점에서 자립지원전담인력의 지속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음
- 자립준비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비해 심리·정서지원 서비스가 부족한 바,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우선적으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10회기의 횟수를 확대하고,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자립지원전담기관과 희망복지지원단의 상호 협력이 업무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립준비청년의 통합사례관리를 거부하는 희망복지지원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관련된 업무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지침 등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자립준비청년에게 특화되어 있지 않은 지원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자립준비청년들의 특정한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스스로 자신을 부양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의 취업준비프로그램 참여가 기초생계수급 자격을 박탈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세심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차 례

## □ 요약

I. 실태조사 개요 / 1	
1. 실태조사 목적과 대상 .....	1
가. 실태조사 배경과 목적 .....	1
나. 실태조사 대상 .....	2
2. 실태조사 방법과 일정 .....	4
가. 개요 .....	4
나. 현장조사와 관계자 인터뷰 .....	4
II. 자립준비청년 현황 및 지원 제도 / 6	
1. 정의 및 근거 법률 .....	6
2. 지원 제도 .....	7
가. 자립정착금 .....	7
나. 자립수당 .....	9
다. 아동발달지원계좌 .....	9
라. 의료비 지원사업 .....	9
마. 기초생활보장제도 공제 .....	10
바. 주거지원 .....	10
사. 취업지원 .....	10
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11

3. 자립준비청년 현황 .....	11
가. 자립준비청년 수 .....	11
나. 만 18세 퇴소 청년 수 및 주거 현황 .....	12
다. 진학 현황 .....	13
라. 취업 현황 .....	14

### Ⅲ.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실태조사 / 16

1.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개요 .....	16
2. 주요업무 수행 현황 .....	18
가. 사후관리 .....	18
나. 현장지원 경험 .....	29
다. 지원공백의 청년들 .....	42

### Ⅳ. 개선과제 / 48

1. 연락두절 해소 및 위기청년 발굴 .....	48
2. 가정위탁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	50
3. 경계선 지능 자립준비청년 지원 .....	52
4. 자립지원전담인력 충원과 합리적인 처우 개선 .....	54
5. 충분한 심리·정서지원 서비스 제공 .....	55
6. 희망복지지원단의 역할 분담 강화 .....	57
7. 자립체험 교육 의무실시 규정 마련 .....	58
8. 성(性)적 안전에 관한 교육 강화 .....	59
9. 맞춤형 지원 제도의 실질적 구현 .....	60

### □ 참고문헌 / 61

## 표 차례

[표 1] 전국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현황 .....	3
[표 2] 현장조사 대상 자립지원전담기관 .....	5
[표 3] 자립지원전담기관 주요 조사 항목 .....	5
[표 4] 2023년 자립정착금 지급 기준 .....	8
[표 5] 최근 5년간 연도별 자립준비청년 수 .....	12
[표 6] 만 18세 퇴소 자립준비청년 수 .....	12
[표 7] 만 18세 퇴소 자립준비청년 주거 현황 .....	13
[표 8] 자립준비청년 대학진학 현황 .....	14
[표 9] 자립준비청년 취업 현황 .....	14
[표 10] 자립준비청년 취업 직종별 현황 .....	15
[표 11] 자립지원전담인력 배치 현황 .....	16
[표 12] 자립지원전담인력 1인당 담당 인원 현황 .....	18
[표 13] 2021년도 자립수준평가 대상자 현황 .....	20
[표 14] 지역별 자립준비청년 연락두절 비율 .....	21

## 그림 차례

[그림 1] 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현장간담회 .....	22
[그림 2] 전라북도자립지원전담기관 현장간담회 .....	25
[그림 3] 대전자립지원전담기관 현장간담회 .....	26
[그림 4] 대전자립지원전담기관의 ‘행복꾸러미’ 준비 상황 .....	27
[그림 5] ‘행복꾸러미’에 대한 자립지원청년들의 감사 SNS .....	28
[그림 6] 제주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현장간담회 .....	37
[그림 7] 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체험관 .....	58

## I. 실태조사 개요

### 1. 실태조사 목적과 대상

#### 가. 실태조사 배경과 목적

아동양육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되어 자립하는 청년은 한해 대략 2천여 명 수준이다. 그간 정부부처 및 사회 각계의 노력으로 자립준비청년의 여건은 한결 나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2018년 국회입법조사처의 『보호종료청소년 자립지원 방안』 보고서<sup>1)</sup> 발간이 계기가 되어 여러 의원실과의 세미나가 개최되었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보호종료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후에도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운영 개선’ 보고서(2020년)<sup>2)</sup>, ‘보호종료청소년을 위한 개인자립지원 상담사 도입과제(2021년)’ 보고서<sup>3)</sup>가 연이어 발간되어, 보호종료청소년 자립에 필요한 제도적 개선 요구를 이어갔다. 정부는 이에 호응하여 2019년 자립수당 및 주거지통합서비스사업을 실시하였고, 2020년에는 자립수당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심리정서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국회도 분주히 움직였다. 제21대 국회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 연령을 24세로 상향조정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 근거를 명시한 『아동복지법 개정법률안』 대안이 2021년 12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많은 변화가 있었다.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청년에게 ‘아동’ 명칭이 부적절

- 1) 허민숙, 「보호종료청소년 자립지원 방안」, 『NARS 입법·정책』, 제8호, 국회입법조사처, 2018.
- 2) 허민숙, 「보호종료청소년 자립지원 방안: 아동발달지원계좌(CDA)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과제」, 『이슈와 논점』, 제1776호, 국회입법조사처, 2020.
- 3) 허민숙, 「자립지원의 공백: 보호종료청소년을 위한 개인 자립지원 상담사도입 과제」, 『NARS 현안분석』, 제192호, 국회입법조사처, 2021.

하다는 지적이 있어 ‘자립준비청년’이라는 용어로 대체되었고, 17개 시·도에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설치되었다. 디딤씨앗통장의 국가지원도 확대되었고, 자립정착금 지원금도 상향되었다. 자립지원수당 지급 기한도 5년까지 연장되었다.

정부는 2021년 7월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sup>4)</sup>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주거·교육·일자리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2022년 11월에는 관계부처합동으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하여 자립준비청년과의 따뜻한 동행을 약속하기도 하였다.<sup>5)</sup>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입법·정책적 성과가 자립준비청년의 현실적 삶의 안정, 지속가능한 자립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연계 과정이 매끄럽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이에 이 보고서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지원 서비스를 안내·연계하고, 자립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행정서비스 운영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자립준비청년 지원 서비스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보완과 관련된 다각적인 관찰과 양방향 논의를 통해 더 나은 자립지원서비스 마련 및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 나. 실태조사 대상

이 보고서의 실태조사 대상은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17개 시·도에 마련된 자립지원전담기관이다. 「아동복지법」 제39조의2에 그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있다.<sup>6)</sup>

4) 관계부처 합동,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 2021.7.13.

5) 관계부처 합동,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2022.11.17.

6) 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은 2011년 8월 4일 「아동복지법」 전부 개정으로 제40조에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되었고, 2021년 12월 21일 설치·운영 규정이 신설되었다.

법률 제40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인 위탁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17개 자립지원전담기관은 모두 위탁운영되고 있다. 주로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법인이 위탁운영기관에 포함되어 있다. 전국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전국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현황

구분	지역	정원	비고(법인)	개소일
1	서울	24	사단법인(아동복지협회)	2022.11.
2	부산	16	사단법인(아동복지협회)	2021.10.
3	대구	8	사단법인(대구YWCA)	2022.6.
4	인천	10	사단법인(아동복지협회)	2022.5.
5	광주	10	사단법인(아동복지협회)	2022.6.
6	대전	7	사단법인(아동복지협회)	2023.1.
7	울산	2	사회복지법인(시설)	2022.9.
8	세종	2	사회복지법인(시설)	2022.10.
9	경기	32	사회복지법인	2021.1.
10	강원	10	사회서비스원	2022.8.
11	충북	7	사단법인(아동복지협회)	2022.7.
12	충남	8	사단법인(아동복지협회)	2022.1.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21.]

7)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2021. 12. 21.>

구분	지역	정원	비고(법인)	개소일
13	전북	9	사회복지법인(굿네이버스)	2023.1.
14	전남	11	사단법인(아동복지협회)	2022.1.
15	경북	9	사단법인(아동복지협회)	2022.2.
16	경남	12	사회복지법인(굿네이버스)	2022.1.
17	제주	3	사회복지법인(시설)	2022.1.

자료: 아동권리보장원,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3.4.8.).

## 2. 실태조사 방법과 일정

### 가. 개요

자립지원준비청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자립준비청년의 규모, 주거, 대학 진학, 취업 현황 등의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하였다. 보건복지부의 자립실태조사, 자립지원 통계현황 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시설퇴소청소년 생활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자립 현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자립준비청년의 서비스 욕구를 살펴보았다.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중 기관의 규모, 자립지원청년 배정 현황, 기관 종사자의 자립지원 업무 경험 등을 중심으로 방문기관을 선정하였다. 실제로 업무 수행에 있어 호평을 받고 있는 기관과 지역적 대표성을 감안하였다.

### 나. 현장조사와 관계자 인터뷰

17개 시·도 기관 중 종사자 및 담당 자립준비청년이 많은 지역, 그리고 자립지원업무 숙련 담당자의 근무기관 중심으로 추천을 받아 방문기관을 선정하였다. 담당자와 유선으로 일정을 협의하고 사전에 조사항목을 미리 전달하여 면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규모 인원이 근무하는 경우 되도록 직원 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 내부 협의에 따라 인터뷰 대상자

를 추천받아 면담을 진행하였다.

[표 2] 현장조사 대상 자립지원전담기관

방문일시	기관명	면담자
2023.4.21.	부산광역시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김지웅 팀장 외 2인
2023.4.27.	전라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전숙영 기관장 외 2인
2023.5.19.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변성환 기관장 외 3인
2023.6.1.	대전광역시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윤진 팀장 외 2인

[표 3] 자립지원전담기관 주요 조사 항목

연혁 및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 연혁</li> <li>• 조직 구성</li> <li>• 종사자 현황(유사업무, 유관기관 경험 등)</li> <li>• 업무 분장</li> <li>• 예산 현황</li> </ul>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립준비청년 배치 현황</li> <li>• 제공 서비스 및 프로그램(주거, 진로, 학업, 취업, 건강, 경제, 정서, 심리, 사회적 관계, 문화여가 등)</li> <li>• 서비스 실적</li> <li>• 사례관리 서비스 운영 방식, 성과, 한계, 보완점</li> <li>• 공통사업, 개별사업</li> </ul>
종사자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분량·내용, 보상, 처우의 적절성</li> <li>• 전문성 여부</li> <li>• 보수교육 등 제도 및 현황, 필요성</li> </ul>
개선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립준비청년 발굴 및 연계 성과, 어려움</li> <li>• 유관기관과의 협력 사례, 어려움</li> <li>• 법률 개정 및 제도개선 과제</li> </ul>

## II. 자립준비청년 현황 및 지원 제도

### 1. 정의 및 근거 법률

자립준비청년은 자립지원 대상자를 일컫는 용어로 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지 5년 이내인 아동을 말한다.<sup>8)</sup> 다만, 지난 8월 8일 법률 개정으로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자립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었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법률 근거는 「아동복지법」에 마련되어 있다. 동법 제38조<sup>9)</sup>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종료 또는 아동복

8)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자립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규정되어 있다.

9)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 1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3. 8. 8.>
1.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3.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 지원을 위해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주거 및 취업, 자립정착금 및 수당지급 등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자립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자립준비청년의 사후관리체계와 관련하여서는 동법 제39조의2에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다.<sup>10)</sup>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종료 또는 퇴소 이후의 자립지원을 위해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 지원 제도

### 가. 자립정착금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모든 자립준비청년은 자립정착금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자립준비청년이 아동양육시설 등을 퇴소한 후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을 1회 지급한다. 정부는 각 지자체에게 1천만 원 이상을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2023년 기준 자립정착금을 1천 5백만 원 지급하는 지자체는 모두 4곳(서울, 대전, 경기, 제주)이고, 그 외 13개 지자체에서는 1천만 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자립준비청년이 자산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립정착금 지급절차를 개선하였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교육·자립컨설팅 또는 국민연금공단의 종합재무상담을 받은 이후 분할지급하는

<개정 2023. 8. 8.>

- 10)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식이다. 예를 들어, 1천만 원의 자립정착금을 자립교육 이수 이후 1차 지급하고, 1차 정착금 사용내역 첨부 및 2차 사용계획 컨설팅을 이수한 이후, 나머지 금액을 2차 지급하는 방식이다.<sup>11)</sup>

[표 4] 2023년 자립정착금 지급 기준

(단위: 만 원)

시·도	자립정착금 1인당 지급 기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서울특별시	1,500	1,500	1,500
부산광역시	1,000	1,000	1,000
대구광역시	1,000	1,000	1,000
인천광역시	1,000	1,000	1,000
광주광역시	1,000	1,000	1,000
대전광역시	1,500	1,500	1,500
울산광역시	1,000	1,000	1,000
세종특별자치시	1,000	1,000	1,000
경기도	1,500	1,500	1,500
강원도	1,000	1,000	1,000
충청북도	1,000	1,000	1,000
충청남도	1,000	1,000	1,000
전라북도	1,000	1,000	1,000
전라남도	1,000	1,000	1,000
경상북도	1,000	1,000	1,000
경상남도	1,000	1,000	1,000
제주특별자치도	1,500	1,500	1,500

주: 이전의 지역별·보호유형별 차등이 완전히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자료: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3 자립지원 업무 매뉴얼』, 2023, p.220.

11) 보건복지부, 『2023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 2023, p.14.

### 나. 자립수당

자립수당은 자립준비청년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고, 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하면서 본 사업으로 정착하였다. 2023년 1월부터 월 40만 원을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한다.<sup>12)</sup>

### 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사업인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는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으로 월 5만 원 내 범위에서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최대 월 10만 원을 매칭해 주는 제도이다.<sup>13)</sup> 만 18세부터 학자금, 기술자격·취업 훈련비, 창업자금, 주거마련, 의료비, 결혼자금 등의 용도로 인출이 가능하고, 만 24세 도달 시 별도 해지 절차 없이 자동인출할 수 있다.<sup>14)</sup>

### 라. 의료비 지원사업

2023년 의료비 지원사업이 신설되어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에게 보호종료 후 5년간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주고 있다. 이때 의료급여 2종 수준이란 1차 병원 외래 이용시 본인부담금 1천 원, 2·3차 병원 이용시 외래 급여비 총액의 15%, 입원 급여비 총액의 10%를 본인부담금으로 책정하는 것을 말한다. 약국은 본인부담금 5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sup>15)</sup>

12) 보건복지부, 『2023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 2023, p.105.

13) 같은 책, pp.47-49.

14) 관계부처 합동,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2022, p.6.

15) 같은 책.

마. 기초생활보장제도 공제

자립준비청년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면 보호연장 기간부터 보호종료 후 5년간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3년부터는 소득 공제 수준이 더 확대되어 60만 원을 공제하고 30%를 추가로 공제한다. 또한, 기존에 소득 산정에 포함되었던 자립정착금을 재산가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였다.<sup>16)</sup>

바. 주거지원

자립준비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거지원은 1) LH건설임대주택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2) 청년 전세임대주택, 3)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주택, 4) 청년 매입임대주택, 5) 희망디딤돌센터, 6)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 7)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8)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등이 있다.<sup>17)</sup>

사. 취업지원

자립준비청년은 1) 국민취업지원제도, 2) 창업성공패키지, 3) 국민내일배움카드, 4) 중소기업 탐방프로그램, 5) 대학일자리센터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sup>18)</sup> 이에 더하여 보건복지부는 고용센터 내 자립준비청년 전담자를 지정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2023년부터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기업탐방 등 특화과정의 운영을 시작하였다.<sup>19)</sup> 자립준비청년이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하여 5개월의 도약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최대 300만 원의 ‘도약준비금’을 수령할 수 있다.<sup>20)</sup>

16) 관계부처 합동,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2022, p.7.

17)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2023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 2023, pp. 33-38 참조.

18)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2023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 2023, pp. 26-32 참조.

19) 관계부처 합동,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2022.

20)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 안내」 (최종 검색일: 2023.5.12.),



### 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3개월간 10회기의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사전·사후검사 1회, 대상자에 따른 맞춤형 상담 서비스 8회, 종결상담 1회로 구성되어 있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지원 대상이며,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아동인 경우에는 1순위 지원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본인부담금도 면제되어 서비스 요금이 전액 지원된다.<sup>21)</sup>

## 3. 자립준비청년 현황<sup>22)</sup>

### 가. 자립준비청년 수

2022년 기준 자립준비청년은 총 1,740명으로, 최근 5년 간 가장 작은 규모이다. 가정위탁 자립준비청년 수가 899명으로 가장 많고, 아동양육시설 717명, 공동생활가정 124명 순이다.

보호종료 이후에는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자립수당 및 사후관리 등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실시되는 지원제도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청년의 수는 2022년 기준 총 11,403명이다.

<<https://www.work.go.kr/youngChallenge/index.do>>

21) 보건복지부, 『2023년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안내』, 2023, p.59, 61.

22) 2022년도의 자립준비청년의 정확한 현황은 현재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문제로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로부터 2022년도 자립준비청년의 수만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여, 그 외 자료는 2021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표 5] 최근 5년간 연도별 자립준비청년 수

(단위: 명)

구분	합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2018	2,606	1,065	192	1,349
2019	2,587	992	172	1,423
2020	2,368	827	168	1,373
2021	2,102	726	157	1,219
2022	1,740	717	124	899
보호종료 5년이내	11,403	4,327	813	6,263

자료: 보건복지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3.8.2.).

#### 나. 만 18세 퇴소 청년 수 및 주거 현황

2021년 기준 만 18세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 수는 모두 863명으로 1,446명이었던 2017년에 비해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2017년 자립준비청년의 55.8%가 만 18세에 퇴소하였다면, 2021년도에는 41.1%가 퇴소하여 14.7%p 감소하였다.

[표 6] 만 18세 퇴소 자립준비청년 수

(단위: 명)

구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2017	418	268	58	50	373	279	1,446
2018	431	323	79	78	381	266	1,558
2019	351	294	60	60	328	219	1,312
2020	307	229	62	50	229	122	999
2021	267	213	59	53	183	88	863

자료: 아동권리보장원,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3.4.8.).

2021년 기준 만 18세 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지원이 65%, 개인부담이 35%이다. 2017년도의 정부지원 비율 39%에 비해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자립준비청년의 주거현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

[표 7] 만 18세 퇴소 자립준비청년 주거 현황

(단위: 명, %)

구분	합계	정부 지원					개인 부담								
		NH 지원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기타	소계	전세	월세	자가	고시원	기숙사	친인척	귀가	기타	소계
2017	686	177	64	7	19	267	2	101	1	2	176	24	72	41	419
	100	26	9	1	3	39	0	15	0	0	26	3	10	6	60
2018	754	294	84	7	11	396	2	65	2	7	153	19	65	45	358
	100	39	11	1	1	52	0	9	0	1	20	3	9	6	48
2019	645	346	55	9	9	419	6	59	1	4	72	14	42	28	226
	100	54	9	1	1	65	1	9	0	1	11	2	7	4	35
2020	536	261	71	11	10	353	0	43	0	1	51	18	43	27	183
	100	49	13	2	2	66	0	8	0	0	10	3	8	5	34
2021	480	228	64	5	12	309	4	35	2	1	54	17	43	13	169
	100	48	13	1	3	65	1	7	0	0	11	4	9	3	35

자료: 아동권리보장원,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3.4.8.).

#### 다. 진학 현황

자립준비청년의 대학진학 현황을 살펴보면,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보호종료 아동 중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2017년 15.0%, 2018년 20.5%, 2019년 22.3%, 2020년 23.2%, 2021년 24.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4년제 대학 진학률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6.2%에서 2021년 11.2%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대학진학률 73.7%<sup>23)</sup>과

비교해 볼 때, 큰 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

[표 8] 자립준비청년 대학진학 현황

(단위: 명, %)

구분	자립준비청년 수	대학진학	비율	4년제 진학	비율
2017	2,593	390	15.0	160	6.2
2018	2,606	535	20.5	239	9.2
2019	2,587	576	22.3	225	8.7
2020	2,368	550	23.2	232	9.8
2021	2,102	518	24.6	235	11.2

자료: 아동권리보장원,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3.4.8.).

### 라. 취업 현황

자립준비청년의 취업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자립준비청년의 39.2%가 취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8년 42.2%에서 다소 감소하였지만, 대학 진학률이 증가한 것과 비교해서 살펴볼 필요도 있다.

[표 9] 자립준비청년 취업 현황

(단위: 명, %)

구분	자립준비청년 수	취업자 수	비율
2018	2,606	1,101	42.2
2019	2,587	1,146	44.3
2020	2,368	946	39.9
2021	2,102	825	39.2

자료: 아동권리보장원,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3.4.8.).

23) e-나라지표, 「취학률 및 진학률」 (최종 검색일: 2023.4.5.),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20](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20)>

한편, 취업의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서비스판매직과 기계 조작 및 단순노무의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기준 총 825명의 취업자 중 50.8%가 판매직, 단순노무 직종에 취업하였다.

[표 10] 자립준비청년 취업 직종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총 취업 자수	사무 관리직	전문직	서비스판 매직	기능직	기계조작 및 단순노무	기타
2018	1,101	127 (11.5)	214 (19.4)	362 (32.9)	130 (11.8)	225 (20.4)	43 (3.9)
2019	1,146	140 (12.2)	227 (19.8)	393 (34.3)	106 (9.2)	212 (18.5)	68 (5.9)
2020	946	111 (11.7)	202 (21.4)	279 (29.5)	81 (8.6)	202 (21.4)	71 (7.5)
2021	825	96 (11.6)	207 (25.1)	203 (24.6)	52 (6.3)	216 (26.2)	51 (6.2)

주: 전문직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시설 등에서 자의적으로 선택한 점을 감안할 수 있다.

자료: 아동권리보장원,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3.4.8.).

### Ⅲ.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실태조사

#### 1.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개요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아동복지법」 제39조의2에 의해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되었다. 시·도는 「아동복지법」 제40조에 따라 자립지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어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는 ‘자립지원전담인력’이라 칭한다. 2023년 7월 기준 180명의 정원 중 총 161명이 배치되어, 인력 충원율은 89.4%에 이르고 있다. 현장조사 시 4월의 충원 인력은 146명이었는데, 3개월 후인 7월 161명으로 증가하였다.

[표 11] 자립지원전담인력 배치 현황

(단위: 명)

연번	시·도명	정원	배치현황
1	서울	24	24
2	부산	16	14
3	대구	8	8
4	인천	10	10
5	광주	10	10
6	대전	7	6
7	울산	2	2
8	세종	2	1
9	경기	32	26
10	강원	10	8
11	충북	7	7
12	충남	8	6
13	전북	9	9

연번	시·도명	정원	배치현황
14	전남	11	8
15	경북	9	9
16	경남	12	11
17	제주	3	2
계		180	161

주: 2023년 7월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3.8.2.).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지원전담인력은 해당 시·도에 거주하는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 대해 연 1회 이상 사후관리와 자립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이때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양육시설 내 자립지원전담요원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할 것이 기대된다.

자립지원전담인력의 주요 업무는 보호종료 후 매년 1회 자립수준평가를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기본 사후관리이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1) 신체 및 정신적 건강, 2) 학업, 3) 취업, 4) 주거, 5) 경제, 6) 사회적 관계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립지원 통합서비스로 연계할 수 있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자립준비청년 중 초기상담을 통해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라 볼 수 있다. 사후관리 서비스가 자립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 시 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 한다면, 통합 사례관리는 대상자에 대한 밀착 서비스로 복지급여 및 서비스 연계를 실시한다. 1인당 사례관리비 지원 한도 내에서 생활, 주거, 교육, 취업, 의료, 심리정서 등 서비스 이용 및 물품 구매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 2. 주요업무 수행 현황

### 가. 사후관리

#### (1) 기본 사후관리

사후관리란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의 개별상황 및 필요에 따른 서비스 지원을 말하며, 기본 사후관리와 자립지원통합서비스로 구분된다. 이때 기본 사후관리란 보호종료 후 자립상태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말한다. 매해 최소 1회 이상 주로 전화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진학, 취업, 소득, 주거, 기초생활수급여부, 자립정착금 수령 여부 등을 점검한다.

2023년 7월 기준 총 17개 시·도에 배치된 161명의 자립지원전담인력은 11,403명의 사후관리를 전담하고 있다. 1명의 인력이 약 71명의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지원 인원 부담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으로 1인의 전담인력이 담당하고 있는 청년 수가 137명에 이르고 있다. 다음으로는 제주와 강원도의 경우 1명의 전담인력이 각 110명과 95명의 청년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지원 청년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을 제외하고는 광주로 1인의 전담인력이 38명을 담당하고 있다.

[표 12] 자립지원전담인력 1인당 담당 인원 현황

(단위: 명)

구분	정원	배치현황	자립준비 청년 수	통합사례관리 인원	1인 인력당 청년 수	
1	서울	24	24	1,508	310	62.8
2	부산	16	14	910	175	65.0
3	대구	8	8	406	85	50.8
4	인천	10	10	487	105	48.7
5	광주	10	10	379	105	37.9



구분	정원	배치현황	자립준비 청년 수	통합사례관리 인원	1인 인력당 청년 수	
6	대전	7	6	307	80	51.2
7	울산	2	2	142	25	71.0
8	세종	2	1	13	5	13.0
9	경기	32	26	1,820	365	70.0
10	강원	10	8	757	110	94.6
11	충북	7	7	475	75	67.9
12	충남	8	6	512	85	85.3
13	전북	9	9	721	100	80.1
14	전남	11	8	1,094	115	136.8
15	경북	9	9	764	100	84.9
16	경남	12	11	888	125	80.7
17	제주	3	2	220	35	110.0
계	180	161	11,403	2,000	70.8	

주: 2023년 7월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3.8.2.).

모니터링 업무는 자립현황 파악에 대한 정보 수집의 의미도 있지만, 자립준비 청년의 입장에서는 자립정착금, 디딤씨앗통장, 공공임대 등의 지원 제도에 대해 알게 되고,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는 연락을 아예 받지 않는 청년의 수가 상당수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는 [표 13]의 자립수준평가대상자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2) 자립지원 통합서비스<sup>24)</sup>

자립지원 통합서비스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자립준비청년 중 밀착 관리가 필요한 소수 인원을 선정하여 자립능력을

24)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3년 자립지원 업무 매뉴얼』, 2023, pp.73-80.

강화시켜 주기 위한 목적하에 운영 중에 있다. 지자체,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지원센터, 기타 기관 등에서 대상자를 의뢰하면 초기상담을 거쳐 통합서비스 대상자인지를 판별한다. 10가지 영역(안전, 건강, 일상생활유지,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경제, 교육, 고용, 생활환경, 법률권익보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상담 및 내부 사례회의 결과에 따라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하고, 주거불안 및 상시적 의료지원을 요하는 경우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도록 한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사례관리 수행의 주체이지만, 복합적·만성적 문제 등 위기·집중 사례인 경우에는 읍면동 맞춤형 복지 또는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통합 사례관리로 의뢰할 수 있다.

2023년도에는 사후관리대상자 중 총 2천명의 청년이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다.

### (3) 자립수준평가 대상자 현황 및 연락두절률

자립수준평가 대상자란 보호종료 이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을 말한다. 2021년 아동복지시설 자립수준평가 대상자는 총 11,397명이다. 이들 중 취업상태로 조사된 비율은 40.4%이고, 진학 13.0%, 기타 23.6%이다.

한편 11,397명 중 20.2%에 달하는 2,299명이 연락두절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정위탁 청년의 연락두절 비율이 29.5%로 가장 높았고, 양육시설의 경우는 7.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2021년도 자립수준평가 대상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전체
계	4,436 (100.0)	494 (100.0)	6,467 (100.0)	11,397 (100.0)
진학	937 (21.1)	130 (26.3)	411 (6.4)	1,478 (13.0)

구분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전체
취업	2,128 (48.0)	207 (41.9)	2,274 (35.2)	4,609 (40.4)
군입대	37 (0.8)	15 (3.0)	265 (4.1)	317 (2.8)
기타	1,000 (22.5)	85 (17.2)	1,609 (24.9)	2,694 (23.6)
연락두절	334 (7.5)	57 (11.5)	1,908 (29.5)	2,299 (20.2)

자료: 아동권리보장원, 『2021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 2022, p.192.

지역별 연락두절률을 살펴보면, 양육시설 중 연락두절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양육시설의 경우 충북이 12.7%, 공동생활가정은 전북 18.5%, 가정위탁 인천 47.9%인 점이 확인된다.

[표 14] 지역별 자립준비청년 연락두절 비율

(단위: 명, %)

구분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계	334 (7.5)	57 (11.5)	1,908 (29.5)
서울	78 (8.9)	6 (9.2)	169 (26.1)
부산	34 (6.7)	3 (7.7)	127 (30.7)
대구	18 (7.1)	0 (0.0)	44 (33.3)
인천	8 (4.3)	0 (0.0)	162 (47.9)
광주	6 (3.0)	2 (8.7)	37 (22.2)
대전	9 (6.5)	0 (0.0)	47 (32.2)
울산	2 (7.7)	0 (0.0)	59 (42.1)
경기	23 (5.8)	21 (15.8)	369 (30.5)
강원	13 (11.0)	2 (7.7)	172 (27.7)
충북	21 (12.7)	2 (8.3)	99 (34.7)
충남	17 (8.2)	2 (8.0)	126 (39.6)
전북	29 (11.5)	10 (18.5)	64 (15.3)
전남	22 (6.1)	4 (11.8)	87 (18.6)

구분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경북	15 (5.0)	1 (14.3)	90 (18.2)
경남	34 (10.1)	3 (15.0)	242 (45.5)
제주	4 (4.3)	1 (14.3)	14 (10.2)
세종	1 (5.3)	0 (0.0)	-
합계	4,436	494	6,467

자료: 아동권리보장원, 『2021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 2022, pp.199-201.

#### (4) 연락두절 원인

현장조사 결과, 전화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은 몇 가지 원인으로 파악되었는데, 아예 다른 사람 번호인 경우, 번호가 없는 경우, 그리고 그냥 끊어버리거나 차단하여 수신하지 않는 경우이다.

[그림 1] 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현장간담회



사진설명: 부산광역시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왼쪽부터 안성현 과장, 김지웅 팀장, 황다정 팀장(2023.4.21.).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습니다. 다른 사람 번호인 경우도 있고, 그냥 끊어버리거나 아예 안받는 경우도 있어요.”(김지웅 팀장, 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2023.4.21.)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는 경우에는 전화번호 자체가 변경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전화번호가 아예 없어서 연락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가정위탁의 경우 보호자의 전화번호가 남겨져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립준비청년의 보호자라 할 수 있는 조부모 및 친인척이 전화를 받는 경우, 의사소통 어려움 등의 이유로 끝내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한다.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도 있구요. 바뀌거나, 그리고 가정위탁 같은 경우에는 위탁가정의 전화번호가 넘어온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집에 계신 연로하신 할머니가 전화를 받으시는거죠. 그래서 아이 번호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할머니들도 못찾으시는거예요. 거의 대답이 ‘나 몰라.’ 이러시고.”(백송이 팀장, 전라북도자립지원전담기관, 2023.4.27.).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위탁 청년의 연락두절률이 29.5%로 가장 높은 이유가 일부분 설명되는 대목이다.

현장의 자립지원전담인력은 바로 이처럼 사후관리 청년들과 접촉조차 어려운 상황을 가장 답답해하고 있었다. 현재로서 이들에게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전화 번호 하나라는 점에서 전화를 받지 않는 이상 지원 서비스 자체가 개시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전화라도 받은 친구들은 뭔가 이제 대화가 오가고 최소한 저희가 이제 뭐지 주소 그다음에 직장 뭐 이런 거 정도는 기본적으로 소득 이런 거 정도는 파악을 하고, ‘요즘 필요한 게 있냐 뭐 힘든 부분은 없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계속 질문을 하는데 그런 거를 질문하려고 해도 연락이 돼야 되잖아요.”(이설희 사회복지사, 제주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2023.5.19.).

한편, 전화를 받는 경우에도 관련 기관을 알리고 필요 서비스 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이라는 명칭이 아예 생소하거나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경우 경계심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희가 연락이 안 되면 문자도 같이 남기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어떤 지원을 하는 전담기관입니다 하고 차후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하고 문자를 남기는데, 그것도 연락이 다시 닿은 친구들의 얘기에 따르면 그냥 스팸 문자인 줄 알았다. 또 전체 사후관리 대상에게 다른 뭐 어떤 주거비 지원이나 이런 사업비 안내를 하면, 반기는 친구보다는 약간은 경계하는 느낌, 나중에 이야기를 하다보면, 그때 그 문자는 제가 스팸인 줄 알고 그냥 넘겼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김지웅 팀장, 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2023.4.21.).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최근 개소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후관리대상자는 보호종료 이후 5년 이내의 청년을 포함하기 때문에 퇴소 당시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대해 안내받지 못한 청년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청년들의 이러한 반응은 이례적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청년들이)아직 기관(양육시설)에 남아 있을 때 앞으로 이 선생님이 연락을 주기적으로 줄테니까 힘든 부분이 있으면 연락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매뉴얼이 마련되기 이전에 퇴소한 청년들에게는 적용이 안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원 대상자 중에 2년차 이상인 친구들은 말 그대로 저희가 전화번호 하나 받아가지고 개입을 해야 하는 상황인거죠.”(김지웅 팀장, 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2023.4.21.).

##### (5) 연락률 제고를 위한 현장 전략

1인당 자립지원전담인력이 13명(세종)에서 137명(전남)에 이르는 등 지역마다 처한 상황이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 조사를 위해 방문한 기관에서는 여러 경로로 연락이 닿지 않는 청년들에게 접촉하고 있었다. 전북의 경우 시설 및 가정위

탁 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존재를 보호대상아동들에게 잘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었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설치되기 이전 시범사업이었던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사업을 했던 전력으로 인해 지역 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인지도를 얻은 것도 도움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기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청년들이 다른 청년들에게 기관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기관이 알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2] 전라북도자립지원전담기관 현장간담회



사진설명: 전라북도자립지원전담기관 왼쪽부터 오찬솔 대리, 전숙영 기관장, 백송이 팀장 (2023.4.27.).

“처음에는, 이제 개소 당시에는 보이콧 이런 의심을 많이 받았어요. 경계가 좀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 지역의 강점인 건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저희가 19년도부터 운영했기 때문에 시설 친구들은 저희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굿네이버스에서

연락오면 잘 받아줘.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19년부터 계속 시설과 가정위탁이랑 간담회를 연 2회씩은 진행을 했어서 자립지원전담요원들도 사실은 안내를 해주고,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 사실은 어렵지 않은데, 받기까지가 어려운 거예요.”(전숙영 기관장, 전라북도자립지원전담기관, 2023.4.27.).

대전자립지원전담기관은 자체적으로 ‘행복 꾸러미’ 사업을 운영하여 청년들과의 접촉 저변을 확대해나갔다. 행복 꾸러미 사업은 2021.9월~2022.8월의 기간 동안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에게 기본 생계유지를 위한 생필품 및 식자재 등 생계물품을 지원한 사업을 말한다. 총 10회에 걸쳐 1,330명(중복인원 포함)에게 꾸러미가 전달되었다. 꾸러미 사업은 외부 지원금, 독지가로부터 받은 5천만 원의 후원금이 재원으로 사용되었다.

[그림 3] 대전자립지원전담기관 현장간담회



사진설명: 대전자립지원전담기관, 가운데 윤진 팀장, 오른쪽 정유진 대리, 여숙민 과장은 사진촬영(2023.6.1.).



“다른 데서 사업을 따와가지고 이렇게 독지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애들한테, 저희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생필품 먹거리 주는 게 너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그 먹거리를 주겠다. 한 달에 한 번 행복 꾸러미를 내가 보내주겠다. 그래가지고 우선 시설하고 가정위탁에다 죄다 메일을 돌렸어요. 우리가 이러 이리한걸 기획하고 있으니 애들 연락처를 보내면, 이걸(행복 꾸러미) 주는데 동의한 애들의 주소를 달라 그런거죠.. 그런데 안보내주는 시설도 있었어요. 너네가 뭔데, 약간 이런게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초반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전화해서 너희 선생님한테 연락처 받으셔야. 그래야 애들이 안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름에는 힘내라 삼계탕, 뭉 등등 그래가지고 꾸러미 보내주고, 그 다음에 추석때, 겨울에는 핫팩이랑 곰국 보내 주고요.”(윤진 팀장, 대전자립지원전담기관, 2023.6.1.).

[그림 4] 대전자립지원전담기관의 ‘행복꾸러미’ 준비 상황



주: 왼쪽은 직원들이 대량으로 물품을 구입하여 포장하는 모습, 오른쪽은 꾸러미 내용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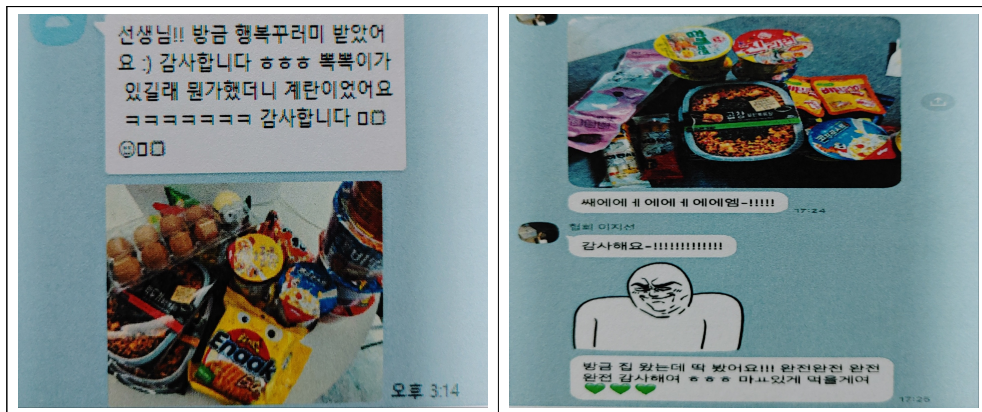
자료: 대전자립지원전담기관, 『대전광역시자립지원전담기관 사업보고서』, 2022.

행복 꾸러미 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정기적으로 먹거리를 보내주고, 손편지를 적어주고, SNS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기관과 전담인력에 대한 신뢰를 한층 한층 쌓아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

인다. 실제 행복꾸러미를 받은 청년들은 즉각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다.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라는 말은 진심으로 수용되었고, 윤진 팀장은 “아고 애들 진짜로 주말에도 연락하고 난리예요”라며 사업의 효용성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한 번하고 말겠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우리가 그 다음 달에 또 보냈잖아요. 또 왔네 이랬을 거라구요. 세 번 네 번 되니까 아이들이 “선생님 있잖아요” 이러면서 연락이 오더라구요.”(윤진 팀장, 대전자립지원전담기관, 2023.6.1.).

[그림 5] ‘행복꾸러미’에 대한 자립지원청년들의 감사 SNS



주: 행복꾸러미를 받은 자립준비청년들이 감사 메시지를 보냈다.

자료: 대전자립지원전담기관, 『대전광역시자립지원전담기관 사업보고서』, 2022.

95명으로 시작했던 행복꾸러미 사업은 6회기에 이르러 150명으로 증가하였다. 단순히 주소지를 확보하여 먹거리를 보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청년들로 하여금 사무실로 찾아오게 하였고, 방문 청년을 통해 그간 연락이 닿지 않았던 다른 청년들에 대한 접촉망을 넓혀가기 시작하였다. 사업을 주도했던 윤진 팀장은 정기적인 식료품 지원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오라고 오라고 추석이었거든요. 추석 때 물품 푸니까 여기 와서 필요한거 가져가라 그랬더니 자기 퇴근하고 가면 9시래요. 괜찮다고 오라고 저희 9시까지 기다려서 애 보고 설문지 받고, 뭐 필요해 뭐 뭐 이런 거 설문지 이거 하나 작성해 달라고 하고, 어떻게 지냈는지, 집은 어디인지, 어떻게 구했는지, 이런 얘기하다보면 주변에 자기 친구 사기당한 얘기나오고 그러는 거죠.”(윤진 팀장, 대전자립지원전담기관, 2023.6.1.).

## 나. 현장지원 경험

### (1) 자원확보의 중요성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양육시설 등을 떠난 자립준비청년이 전국 어느 곳에 가더라도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 하에 운영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해 놓은 지원 제도를 빠짐없이 이용한다면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를 안내받는 것은 중요하다.

한편, 현장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이 추가될수록, 청년들에 대한 접근이 보다 용이함을 밝히고 있다. 현황을 파악하는 용건에서 대화를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필요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할수록 청년들이 경계를 풀고, 자립지원전담인력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연락 두절되는 친구들에 대한 문제가 전국 전담기관의 공통의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개입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부산은 그래도 좀 나은 게 이제 최근에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이슈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외부 지원 사업이 되게 많이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들어왔고 그중에서도 직접적으로 그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주거비 경감시킬 수 있는 월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보니까 사후 관리에 실제로 전화해 봤을 때 반기는 친구보다는 약간은 경계하는 느낌,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월세 지원이나 이런 거 있다. 이제 유인책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안내를 해드리면 좀 자기의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돈을 아낄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러면 약간 관심을 가져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현황 조사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하게끔 돼서 조금 담당자로서는 좀 부담이 덜하죠.

이게 아무런 도움을 못 주는 상태에서 다짜고짜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이런 지원이 되니까 언제든지 연락해라 이러면 친구들도 거부감이 조금 덜하고 진짜 여기서 말만 전화해가지고 무슨 조사하듯이 알고 끝내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는 곳이구나라고 인식을 하면 경계심도 조금 누그러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좀 좋은 것 같아요.”(김지웅 팀장, 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2023.4.21.).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은 최근에 대폭 확대·개선되었다. 언론이 주목하기도 하였고,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해당 사안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후원과 지원이 집중되는 현상을 이끌기도 하였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사회적 관심이 전과 같지 않을 수 있고, 제도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 채 정체될 수도 있다. 현재는 외부의 지원으로 정부 제도 외의 여러 사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언제까지가 될지 확신하기도 어렵다.

다만, 지금의 여러 시범적인 사업들은 후에 제도화에 대한 좋은 단초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에 대한 기록, 평가 등을 남기고, 공유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2) 취업지원 경험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취업은 매우 중요한 요건이다. 지속가능한 자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자립수당을 지급받는 5년의 기간 동안 고용훈련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립준비청년들 스스로도 ‘취업’을 자립의 중요한 척도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up>25)</sup> 시설(아동시설, 청소년시설, 보호시설) 퇴소 청년을 대상으로 한 조

25) 김지연·백혜정·김미향, 『2022년 시설퇴소청년 생활실태조사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p.392.

사에서 청년들은 자립 중요도에 있어 ‘자신의 문제 스스로 결정하기’, ‘타인과의 관계 유지’에 비해 ‘취업’ 항목에 가장 높은 비중(3.56점(5점 척도))을 두고 있었다.

자립준비청년들의 취업 준비를 지원해 온 현장 전문가들은 이들이 중·장기적인 취업 계획 속에서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기보다는 지금 당장 돈벌이가 되는 일에 주로 집중하고 있는 현상을 전달하였다. 학업을 마치고 여러 다양한 스펙을 쌓아 더 나은 일자리를 찾는 또래 집단과는 조금 다른 심리적·물리적 여건에 놓여 있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부모님의 지원과 지지하에 취업 유예 기간을 두면서 충분히 일자리를 탐색하고 준비할 수 있는 또래 청년들과는 사뭇 다른 여건인 것이다.

“청년들은 상당한 불안함 속에 살고 있고, 나 빠르게 돈벌어서 내 인생 빨리 책임져야 해. 지금 당장 진짜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고, 장기적인 계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 도박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취약하죠. 내가 어떻게든 빨리 진짜 이 기반을 잡아야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 이 세상에 나 혼자다라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대학을 포기하고,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업할거예요”, “저는 돈 버는게 제 가장 큰 목표예요.” 이런 친구들이 진짜 많거든요.”(전숙영 기관장, 전라북도자립지원전담기관, 2023.4.27.).

실태조사 연구에서도 동일한 정황이 관찰된다. 시설퇴소 청년들에게 ‘대학 미진학 이유’를 질문한 결과 아동시설 퇴소 청년들의 53.2%가 ‘빨리 취업해서 돈을 벌려고’라고 답변하였다.<sup>26)</sup> 그러다보니, 당장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배달업이나 편의점 알바 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을 하며 학업을 중단하는 일도 빈번하다.

“돈 쉽게 버는 아르바이트 많잖아요. 쿠팡 배달도 그렇고, 뭐 유흥업소도 그렇고, 그러니까 대학교 갔다가도 “선생님, 저 이거 대학교 졸업해도 월급 이삼백 밖에 못 받잖아요. 저 이거 쿠팡배달해서 한달에 육백 벌어요. 저 대학 그만둘래요.” 그 친구들이 뭐 편의점

26) 같은 책, p.35.

알바만 조금해도 한 달에 돈 백만원 벌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대학 나와야 해요?” 하는 친구들 진짜 많거든요.”(전숙영 기관장, 전라북도자립지원전담기관, 2023.4.27.).

상급학교 진학이 양질의 일자리를 항상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돈을 벌고 싶다는 의지가 높은 소득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이들의 취업분야에 있어서도 서비스/판매직, 기계조작/조립,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50.8%로 과반을 넘고 있었다.<sup>27)</sup>

자립준비청년의 월평균 소득을 조사한 결과, 151만 원 이상이라는 답변이 66.3%로 가장 많았고, 101~150만 원은 16.4%, 80만 원 이하라는 답변은 8.7%, 81~100만 원 구간은 8.6%로 조사되었다. 물론 151만 원 이상의 상한액을 설정하지 않아, 이들의 소득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151만 원 이하의 비중이 33.7%라는 것은 이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의 지원제도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어떠한 효용이 있을까?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일자리 지원 정책 중 ‘청년 일경험 지원’은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기업탐방 등 특화과정을 설계·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쉽게 말하면 인턴십 기회를 부여하여, 그야말로 일경험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일경험’이 1회성으로 그치고 있는 문제가 있다. 다시 ‘일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6개월의 대기 기간이 필요하다.

“저희도 설명 듣고 하면 너무 좋을 거 같아서 두 명을 보냈어요. 수자원공사 그래서 두 명이 했는데 거기 다니는 동안 좋았대요.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서 3개월 끝났어요. 끝나고도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진짜 일경험 한거야. 그러니까 이제 또 먹고 살길을 찾아야 하잖아요. 근데 다른거 연결하기 전에 당장 먹거리가 없으니까 기초생계비 신청을

27)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1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 2022, p.152.

하자고 했는데, 일경험 이걸 했기 때문에 바로 기초생계비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거예요... 게다가 다시 재진입이 안되는 거예요.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고요. 애들이 계속 그러니까 ‘선생님 저 어떡해요. 어떡해요’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말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일경험’ 그거 자꾸 연결해달라고 계속 연락 오거든요. 제가 얘기했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윤진 팀장, 대전자립지원전담기관, 2023.6.1.).

‘일경험’ 프로그램의 문제는 직전 3개월의 최저임금 소득으로 인해 곧바로 기초생계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부모의 지원하에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한 경험으로 ‘일경험’을 하는 청년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겠으나, 당사자 자신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이 약 6개월을 대기해야 기초생계비를 수급받을 수 있는 현실은 문제가 있다.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신, 가만히 있으면서 기초생계비를 문제없이 지급 받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아예 일 경험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나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면서 취업 준비를 하다가 취업을 하겠다. 이런 친구들이 조금 더 많아요. 네 이게 소득으로 잡힌다고 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진짜 그래서 저희도 일 경험을 안내해 줄 적에는 최대한 180일 그 이상으로 일할 수 있는 곳으로만 알려주고 있거든요. 실업급여 수당 받을 수 있는 그 일자의 최소 일자여가지고 180일 이상 이제 근무할 수 있는 곳으로 최대한 연결을 해서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 그런 곳이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정유진 대리, 대전자립지원전담기관, 2023.6.1.).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한 경우에도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있다. 고등학교 졸업 후, 1년간 취업활동을 하다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해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하기로 했던 청년은 구직 과정에서 진학을 결정하고 대학 입시에 응시하게 되었다. 고졸의 학력으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힘들겠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간 받아왔던 구직촉진수당<sup>28)</sup>이 ‘부정수급’으로

판정되어 반환을 요청받은 것이다. 해당 제도를 안내하고 있는 웹페이지에는 ‘부정수급 유형’으로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취업된 사실을 숨기고 지원받은 경우’가 예시로 제시되고 있다.<sup>29)</sup> 하지만 이번 사례와 같이 구직 중에 대학 입시에 합격한 것을 사유로 이를 부정수급으로 간주한 것은 합리적 결정이라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더구나 자립준비청년이라는 점에서 더욱 면밀히 관찰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결국 고용센터는 해당 청년에 대해 부정수급 판정을 내리고 청년은 그간 지급받았던 수당을 반환해야 했다. 해당 청년을 지원했던 기관에서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상황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결정임을 아쉬워하고 있었다. 취업상담을 하면서 대졸 학력이 있어야 본인이 원하는 또는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진학으로 진로를 변경하였다는 점, 본인 스스로 부양하는 것 외에는 취업이든 진학이든 준비기간 동안 지원해 줄 이가 없다는 것을 더 고려했어야 한다.

“그 친구가 아예 그걸 입학할 확정을 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을 한 게 아니라 입학할 하기 전에, 이제 마음을 결정하기 전에, 아예 원서도 쓰지 않았을 때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했었고, 하는 도중에 상담을, 이제 직업 상담을 받으면서 본인이 대학을 입학할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 중에 입시에 응한거거든요. 이게 대학입시 원서를 써서 이렇게 합격이 된다고 해도 사실상 본인이 합격을 한다고 해도 다 입학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합격 결정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너는 부정 수급이야라고 이런 표현을 하셨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지침이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해서 결국에는 수당 반환을 하고.” (정유진 대리, 대전자립지원전담기관, 2023.6.1.).

한편, 현장조사에서 만나본 자립지원전담인력 선생님들은 청년들이 단순 아르

28)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여 구직하는 경우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지원한다.(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최종 검색일: 2023.8.2.), <<https://www.kua.go.kr/uapaa010/selectSporCn.do>>

29) 국민취업지원제도, 「의무와 제재」 (최종 검색일: 2023.8.2.), <<https://www.kua.go.kr/uapaa010/selectBassDutyVoltRst.do>>



바이트 자리라도 일을 하려는 욕구가 있다면 그나마 다행인 경우라 전하였다. 무기력과 우울로 인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청년들의 문제가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파악되고 있었다. 깊은 무기력감과 만성된 우울감으로 인해 근로뿐 아니라, 무엇인가를 하는 것 자체에 관심과 의욕이 없는 경우는 어떤 방식의 지원도 효용을 얻기 힘들다. 현장에서는 청년들의 과거 상처와 트라우마를 그 원인으로 진단하고 있었다.

“우리 아이들은 학대와 방임과 이런 유기 이런 과정이 있는 과정으로 상처가 있다라는 기본 전제가 있는 상황에서 서포트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을 때는 애들이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놓는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거죠.”(윤진 팀장, 대전자립지원전담기관, 2023.6.1.).

만성적인 우울감과 무력감에 시달리며 아무것도 하고 싶은 일이 없는 상태에 있는 청년에게는 정부와 지역의 아무리 좋은 지원 제도도 효용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은 가장 근본적이고 필요한 지원 제도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 (3) 심리지원 경험

자립준비청년과 관련된 연구들은 이들의 심리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을 시사한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죽고싶다고 생각해 본 경험’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0.0%가 ‘그렇다’라 답변하였고, 여성 청소년의 비율은 55.9%로 높아 이들의 정신건강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30)</sup> 한편, 19~24세 일반 청년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

30) 보건복지부,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2020, p.154.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경험'에 대한 조사에서는 '그렇다'라는 답변 비율이 2.4%<sup>31)</sup>로 확인되어, 자립준비청년과의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은 좀 기본적으로 우울증이라든가 공황장애 이 정도는 있고, 실제로 좀 더 좀 깊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하면, 이제 실제 자살 시도라든가 자해라든가 이런 것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이외에도 두드러지는 어떤 진단을 받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삶에 대한 의지가 너무 낮아서 노력 자체를 크게 하고 싶지 않아하는 친구들이 좀 많습니다.”(김지웅 팀장, 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2023.4.21.).

자립준비청년에게 마련된 심리·정서건강 지원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특화된 사업은 아니고 만 19~34세를 대상으로, 3개월 간 주 1회 총 10회기의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을 제공해 주는 정부사업이다. 다만, 자립준비청년은 우선지원 대상이 될 수 있고, 본인부담금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sup>32)</sup>

하지만 현장에서는 10회기밖에 제공되지 못하는 바우처 사업만으로 청년들의 정서·건강을 회복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대전자립지원전담기관의 윤진 팀장은 청년들에게 정부가 마련해준 10회의 사용권은 나중을 위해 아끼라고 하고 있고, 지금 당장 다른 지원금으로 서비스 지원을 할 수 있는지를 모색해 보고 있는 상황임을 알려주었다.

“청년바우처 10회, 제가 그랬어요. 장난하나. 근데 저희 청년 중 통합사례 관리 받는 경우에는 제가 신청 못하게 해요. (왜요?) 일생에 한 번인데 저희 사례관리비로 할 수 있잖아요. 어디서 후원금 지원받아서 해줄 수 있잖아요. 우리하고 만나는 동안에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다 당겨서 해주고, (사후관리 종료로) 우리하고 이제 만나지 않게 될 때 그때 신청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윤진 팀장, 대전자립지원전담기관, 2023.6.1.).

31)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2022, p.197.

32)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3년 자립지원 업무 매뉴얼』, 2023, p.252.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 자체가 제공하는 10회기의 상담서비스만으로 상처가 오래되고 깊은 청년들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나마 그 제도마저 필요할 때 적시에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제주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의 경우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연계가 어려웠던 경험이 있다.

[그림 6] 제주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현장간담회



사진설명: 왼쪽부터 이설희 사회복지사, 변성환 관장, 정진석 사회복지사, 고은애 팀장 (2023.6.19.).

“저희 4월에 한 친구가 당장 이제 심리정서쪽으로 이제 도움이 필요하다 싶은 친구가 있어서 이제 연계하려고 주민센터에도 4월 초에 전화를 했었고, 근데 그 당시 대답은 4월은 아예 신청이 안되는 달이니 5월 초에 다시 연락해라. 이 친구는 바로 개입이 필요한 상태였거든요. 제주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를 했죠. 우리 협력기관이기도 하고, 근데 거기마저도 이제 제가 4월에 전화를 했잖아요. 근데 5월 11일이 제일 빠르다. 다른 기관에 알아봤더니 더 늦는 거예요. 이 친구가 개입이 필요한 시점은 지금인데.”(이설희 사회복지사, 제주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2023.5.19.).

현장에서는 자살시도나 자해와 같은 위급한 상황, 전담인력이 판단하기에 지금 바로 위기개입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별다른 대책 없이 시간이 지나고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고립·은둔청년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이설희 사회복지사는 ‘우리가 자립준비청년한테 무조건 특혜를 줘라, 이걸 아니지만, 꼭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내었다.

한편, 자립준비청년들은 심각한 수준의 우울증과 정신건강 문제가 아니더라도, 일상에서의 무기력과 무력감을 느끼는 수준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동시설 퇴소청년 조사에서 ‘매사에 흥미나 즐거움이 거의 없다’는 조사 문항에 대해 ‘며칠 동안’이라는 답변 비율은 36.9%, ‘일주일 이상’ 6.8%, ‘거의 매일’이라는 답변도 7.8%에 이르고 있다.<sup>33)</sup>

또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걱정을 너무 많이 한다’는 조사 문항에 대해서는 ‘며칠 동안’이라는 답변 비율은 28.4%, ‘일주일 이상’ 8.5%, ‘거의 매일’은 10.9%에 이르러<sup>34)</sup> 평온한 일상을 보내지 못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수가 작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일상에서의 불안과 두려움, 무엇인가에 몰두하거나 집중하기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의 무거운 마음 상태는 자립지원전담인력의 지원 경험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보통은 좀 친구들이 자기 삶에 대한 의지 자체가 너무 낮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원이 많아도 활용할 방법에 대해서 좀 잘 모르고 학원을 보내준다고 해도 내가 지금 딱히 뭐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이려고, 뭐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친구들은 어떤 컨설팅을 제시를 해도 그거 자체도 참여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김지웅 팀장, 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2023.4.21.).

33) 김지연 외, 『2022년 시설퇴소청년 생활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p.227.

34) 같은 책, p.238.

이 정도의 무기력감의 원인은 개인적 기질이라기보다는 고립, 단절, 외로움에 의한 상실감일 수 있다. 부산의 김지웅 팀장의 표현처럼 ‘어디 하나 마음 둘 데 없는 청년들’의 입장에서 ‘아무런 의욕이 없는 상태’는 어찌면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이는 다시 말해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 누군가라도 있다면,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의미이고, 그렇다면 이들의 마음이 깊이 병들고 난 이후에, 진단하고 치료할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또래의 평범한 이들이 부모로부터 받게 되는 관심과 의논할 상대의 역할을 찾아주는 것이 필요할지 모른다.

방치하게 되면, 어찌면 깊은 우울감에 빠질지도 모를 청년들의 얘기를 전복에서 들을 수 있었다. 자립준비청년들은 정부의 지원에 대해 가장 관심이 많고, 또 궁금해 할 것이란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그들의 관심이 오로지 정부지원에 있는 것만은 아니었다. 자립준비청년들은 그들의 일상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 했고, 어른으로부터 조언을 얻고 싶어했다.

“어떤 지원을 요청하는 얘기들보다는 사실은 되게 일상적인 얘기들을 하고 싶어 해요. 친구처럼, 그런 일상적인 얘기들, 사례관리사하고 관계 맺기를 좋아하고 그 시간을 되게 좋아해요. 진짜 친구들이 내 또래 말고 조금 더 어른인 사람하고 대화를 이렇게 나눌 만한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 진짜 뭐 친구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진짜 걱정이예요. 아니 친구는 저한테 뭐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일상적인 얘기들 되게 하고 싶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는 그럴 여건이 안 돼요. 여력이 안 되니까 친구들한테 늘 “미안해 선생님 너무 바빠서 오늘은 잠깐 얼굴만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선생님 오늘도 바쁘세요?” 막 이런 얘기들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들을 때마다 되게 미안하고 속상하고 안타깝고.”(백송이 팀장, 전라북도자립지원전담기관, 2023.4.27.).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합서비스로 선정된 자립준비청년은 말하자면 자립취약성이 높게 평가된 청년들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별도 선정된 청년들에 대한 지원도 충분히 제공해 주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원 여력은 부족하고, 업무가 산재한 상황에서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은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사례

관리, 더 많은 시간을 내어주지 못하는 명목상의 밀착관리는 청년의 상황을 더 어렵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었다.

“선정을 해냈음에도 불구하고 잘 케어하지 않으면, 이제 관계가 잘 되고 있는 아이들이 먼저 눈에 띄고 먼저 챙겨지고 이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모니터링을 하고 그렇지만 만남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이 친구하고 소통의 관계가 잘 유지가 안 된다면, 이 친구는 조금 더 고립 쪽이면 확실히 고립·은둔쪽으로 더 나갈 거고 아니면 다른 쪽 비행 쪽으로 나가면 비행 쪽으로 나가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고립·은둔청년들 잘못하면 인력 없이 잘못 운영하게 되면 더 크게 그 친구들을 놓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정진성 사회복지사, 제주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2023.5.19.).

그러나 다시 현실로 되돌아가보면, 전북의 경우만 해도 1인의 전담인력이 80명의 청년들을 담당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몇몇 청년들을 상대하기도 부족한 상황에서 수 명에서 수십 명에 이르는 청년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상대해 주는 것은 사실상 가능한 상황이 아닐 것으로 보인다. 자립지원전담인력 미충원 문제 해결을 시작으로 정원 자체의 대폭 확대 역시 고려해 봐야 한다.

#### (4) 인력소진의 문제와 처우

자립지원전담인력의 현재 충원율은 89.4%이다. 그러나 충원 문제가 전면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기 어려운 지점도 있다. 업무에 따른 보상에 있어서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자립지원전담인력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의 자격과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이라면 4년 이상의 경력을 요한다.<sup>35)</sup> 그러나 이러한 자격 요건에도 불구하고 보수기준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져 있지 않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인

35)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3년 자립지원 업무 매뉴얼』, 2023, p.57.

원에 따른 일정 금액을 기관에 내려주면서 내부에서 알아서 급여를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당연히 개인의 호봉이 정확하게 반영되기 어렵다. 과장급이나 기관장에게는 더 높은 급여체계를 적용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보수에 있어 불합리한 면이 있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낮은 처우와 명확하지 않은 보수기준은 업무 능률 제고와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근데 뭔가 이게 합당한 대우를 안 받고 뭔가 이 정도 금액으로 일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부담이 되긴 하고, 아이들도 너무 좋고 업무에 대한 만족은 있는데, 그거를 버틸만한 처우나 이런 것들이 같이 와주면 좀 더 그런 말 하잖아요. 부모도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하다는 말처럼, 담당자들도 이게 만족감이 있어야 업무 서비스의 질도 훨씬 높아질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냥 이게 (관리) 인원만 줄여가지고 근데 지금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게 한 명당 담당하는 인원을 줄이는 형태로 (전담인력) 인원을 늘리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직원들의 처우를 높이는 쪽으로 가면 오히려 더 만족해서 이직률도 훨씬 줄 거고.”(관계자 인터뷰).

전담인력에 대한 합리적이지 않은 처우는 업무능률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높은 이직율, 구인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원을 새로 보충하면 기존 직원이 임금이 깎이는 경험을 하고 있기도 하다.

“사실은 인력을 채용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렵죠. 1급에 2년 정도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면 사실은 인건비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저희 법인이 위탁 법인이니까 막 법인 전입금을 막 몇 천씩 써가면서 계속 이 사업을 지속할 순 없거든요.”(관계자 인터뷰)

“복지부에서 주는 비용이 모자라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호봉이 올라가고, 호봉을 인정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3월부터 신입을 뽑으려고 했는데, 3월부터 뽑으면 (기존 직원의) 월급이 다 깎이는 거예요.”(관계자 인터뷰).

한 지역에서는 인건비와 사업비가 별도로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업무 담당자가 기관의 인건비 유용을 의심하는 등의 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었다. 지자체가 기관의 위탁운영의 가부를 결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직원들은 항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퇴사를 떠올리고 있는 형편이었다.

“업무상으로 소진이 오지만 그래도 사실은 다시 으쌰으쌰하면서 우리끼리 이렇게 헤쳐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인건비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 재미가 없죠. 다른건 생각하지 않고 그 아이를 찾아가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를 만나서 일을 하는 그런 것도 힘을 빠지게 해요...저희 퇴사 검색했었어요.”(관계자 인터뷰).

## 다. 지원공백의 청년들

### (1) 자립수당 가로채는 가족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들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왔다. 그러나, 제도 마련과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이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모든 자립준비청년들이 제도 내에 포섭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도의 수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삶을 이어나가는 청년들이 있다.

우선, 가정위탁 출신의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사례로, 청년 몫의 자립지원금이나 자립수당을 보호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매달 자립수당이 들어오는 통장은 청년 명의이나 그 통장을 보호자가 관리하고 있는 경우이다. 대전 사례에서 해당 청년은 표면적으로 국가지원을 받고 있지만, 지원금은 만져보지도 못한 채,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겹게 생활하고 있었다.

““OO아 자립수당 받았니?” 했더니 “아니요, 아마 이모가 받을 거예요.” 이래요. 진짜 개가 힘들게 일했거든요. 돈이 없어서 밤에 아르바이트하는 애가, 그때 자립수당 30만원, 그때 30만원이었어요. “OO아 이모한테 얘기해, 자립수당 달라고”, 그랬더니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모가 걸핏하면 ‘키워준 값’ 얘기를 한대요. 그러가지고 진짜 1년을 끌다가, “이모한테 얘기할 필요 없이, 주민센터 가서 통장 변경할게요. 이 한마디만 하면 돼.”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모가 전화해서 욕을 하고 뭐 한비탕했다고 하더라구요.”(윤진 팀장, 대전자립지원전담기관, 2023.6.1.).

자립준비청년들의 보호종료 후 지급되는 자립정착금을 노리는 가족이나 지인들이 있다는 경우는 알려졌으나, 그간 청년을 키워 온 친인척이 청년 명의로 된 통장을 관리하면서, 자립수당을 청년에게 돌려주지 않는 일은 잘 알려지지 않았었다.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이러한 일이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자립지원전담인력이 이러한 내용을 공유하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5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은 청년이 최소 생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하여 학업 및 취업준비 등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에서, 다른 이가 청년의 자립수당을 착복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장조사 과정에서는 자립수당을 행정기관에 신청하였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대상에서 누락되어 약 600만 원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되었다. 지자체의 행정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인데, 해당 기관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려하지 않아 전담기관도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었다. 해당 청년은 2019년에 퇴소하고, 2020년에 수당신청을 하여 신청 자체가 1년이 늦은 상황이었고, 수당 지급이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였다. 홀로 지내는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가까이에서 의논할 가족이 없고, 행정기관을 상대로 민원 제기 등을 통해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유사 사례가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지가 있었고, 원활한 처리가 어려울 경우 국회와 논의하기로 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지난 7월 마침내 미지급 자립수당 지급이 결정되었다. 이후 자립전담기관은 당사자 청년과 수당 사용처에 대해 함께 계획을 세울 것임을 알려왔다.

## (2) 일터에서 성(性)적 위협을 겪는 청년들

많은 경우 자립준비청년들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비와 학비를 스스로 벌고 있다. 정규직 등 안정된 직장을 구하는 동안 부모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청년들은 학업 및 취업 준비 중에도 유예기간 없이 일터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일터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을 터이지만, 특히 여성청년의 경우 고용주로부터의 원치 않는 스킨십과 잦은 연락 등을 경험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 친절과 염려를 가장하기 때문에 청년들은 이러한 위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기도 하고, 인지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베풀어준 친절이 있는데 이를 못된 방식으로 되갚는 ‘배은망덕한 자’가 될까 우려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 부산 사례의 경우, 자립지원전담인력과 상담 과정에서 이러한 ‘위험’이 감지되었고, 전담인력 선생님과의 지속적인 상담 끝에 마침내 당사자 청년이 직장을 그만둠으로써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

“최근에 이제 접촉한 친구 중에 그런 심한 정도는 아닌데 그런 좀 안전의 위험까지는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더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퇴소를 하고 나서 이제 바로 취업을 한 것은 아니고,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서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어서 거주지도 옮기고 삶의 기반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사장이 이 친구가 자립준비청년이라는 것을 알다보니까, 세심하게 잘 챙겨줬는데, 그러다보니까 예기치 못한 스킨십, 이렇게 어깨를 친다든지, 두드린다든지, 그런게 좀 이상하다라고 인지를 하지 못하고 그런걸 흘리듯 말했어요.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좀 더 깊이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보니까, 예쁘다 뭐 이런 표현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좀 자주 사용을 하고, 밤에 연락을 종종 한다든지, 챙겨준다는 명목으로 연락을 한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위험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좀 다시 생각해보고, 행동에 대해서도 한번 느껴보라 했을 때, 본인도 이제 그 이후에 사장의 그런 태도들이 좀 불편하고 좀 싫게 느껴져서 퇴사하고 다른 직장을 구하게 된 사례가 있어요.”(황다정 팀장, 부산광역시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2023.4.21.).

전북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제 막 사회에 나간 청년들이라는 점,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가족이 부재한 자립준비청년이라는 점에서 일터에서의 성(性)적 안전도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 및 점검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에게 선뜻 이야기하기 어려운 얘기라는 점, ‘설마’하면서 홀로 판단하거나 망설이다가는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주목하고, 구체적인 사례 관리 지침이 마련될 필요도 있어 보인다.

“그런 어려움까지 토로하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은 있어요. 엄청 깊이 있게 사례 관리가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사례 관리사한테 이야기를 해주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오찬솔 대리, 전라북도자립지원전담기관, 2023.4.27.).

### (3) 경계선에 있는 청년들

자립준비청년들 중에서도 경계선 지능 장애<sup>36)</sup>가 있는 경우에는 더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한다. 경계선 지능 장애가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은 특별한 취약성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퇴소 시 비교적 큰 액수인 자립정착금과 매달 자립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오히려 범죄 표적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실제 청년들은 사회에 나오자마자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그 경계선 친구들은 사기도 잘 당해요. 핸드폰 누가 잠깐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그 청년 명의로 3~4개 개통해가지고 2~3천 당겨쓰고 뭐가 날아오고.”(윤진 팀장, 대전자립지원전담기관, 2023.6.1.).

36) 경계선 지능이란 일반인의 평균 지능보다 조금 낮고, 지적장애인보다는 조금 높은 경우를 말한다.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의 ‘자립지원 업무 매뉴얼’에 한해 평가하자면, 경계선 지능 아동 보호에 대한 규정은 미흡하다. 경계선 지능 아동과 같은 자립취약아동의 보호종료 시 지원을 강화할 것, 예컨대, 연장보호를 검토할 것, 별도의 서비스 개입 계획을 수립할 것 외에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이 많은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경계선 지능 청년은 통합서비스 관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현장에서는 이들이 통합서비스 대상으로 많이 포섭될수록 의도치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다. 즉 사례관리사의 수가 정해져 있는 가운데, 경계선 지능 청년들을 주요하게 살펴다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례관리 대상 청년들에게 소홀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통합서비스를 경계선 청년들에게 해줬을 때, 성과도 안나와요. 진로성고가 나오겠어요. 취업 성과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부처에서는 자꾸 성과를 내라고 하고, 그러다보면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요. 기능이 괜찮은 청년들, 조금만 우리가 지원해주면 자립할 수 있는 친구인데, 경계선 친구들 돌보느라 그들을 또 놓치면, 그래서 양쪽을 다 살리는 방안을 강구해야해요...경계선이 있는 친구들은 본인 시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가 일어나있으면 새벽 2시에도 연락이 와요.”(윤진 팀장, 대전자립지원전담기관, 2023.6.1.).

#### (4) 미성년 자립준비청년의 법률행위 제한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시설 퇴소 연령은 24세까지 연장되었으나, 2020년에는 999명의 청년이, 2021년에는 863명의 청년이 성인 연령에 이르기 전인 만 18세에 보호시설을 퇴소하였다. 후견인 등 법률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미성년 신분으로 퇴소한 경우에는 당장 생활에 필요한 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서비스를 신청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번 현장조사에서 확인된 사항은 LH 등 임대주택을 지원받더라도 도시가스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도시가스 신청 연령이 만 19세이기 때문인데, 이에 미성년 퇴소 청년들은 시설 선생님 또는 이미 자립해서 나간 선배 등의 명의를 빌려서 도시가스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형이나 그런 명의 빌려서 한다고 해서 직접 도시가스에 전화를 걸었어요. 저희가 애들이 퇴소를 했는데 공급 계약이 안 된다 못 쓴다.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도시가스 측에서도 뭐 예전에는 뭐 알음알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연결을 이게 뭐 사고가 한번 터졌었다. (무슨사고요?) 그때 상담원 얘기로는 이제 계약을 해줬더니 요금을 납부를 많이 안 했단든지 이렇게 터졌었나 봐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더라고요.”(안성현 과장, 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2023.4.21.).

시설 선생님이나 지인의 도움으로 가스공급 서비스를 원활히 받게 되는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겠으나, 18세 퇴소 이후 고립되어 있고, 도움을 주는 이, 마땅히 물을 데를 알지 못하는 청년들은 도시가스 공급 없이 겨울을 지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관련 제도 개선은 물론이고, 연락두절의 문제를 완전히 해소해야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IV. 개선과제

### 1. 연락두절 해소 및 위기청년 발굴

자립지원전담인력의 사후관리란 사실상 1년에 1번 전화를 하여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고 기록하는 일이다. 그러나 사후관리 대상 모두에게 연락이 되어 기록을 남기거나 필요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사후관리 대상자임에도 연락 처조차 확보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럴 때에는 청년이 생활하던 시설 및 가정 위탁지원센터의 협조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그를 통해서도 연락처가 끝내 확보되지 않는다면, 사후관리를 중단하도록 되어 있다.

연락처가 확보되었으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문자 및 이메일로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후관리 및 사례관리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sup>37)</sup> 그나마 이와 같은 연락두절 사후관리자에 대한 지침은 현장 지침이 전무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2023년도에야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락두절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응답하지 않을 경우, 문자로 사후관리 등의 내용을 안내하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침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전화 연락이 닿지 않는 이유가 단지 스팸전화나 피싱 등임을 의심해서 자립준비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연락을 차단한 것이 아니라, 휴대폰 요금이 체납되어 연락 자체를 받을 수 없었던 사정도 있었다는 것이다. 부산광역시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는 지침대로 기록만 남긴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 연락두절 청년들의 주소지에 우편물을 보냈고, 그 중 통신요금이 미납되어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한 청년이 우편물을 보고 센터를 찾아오는 경우도 있었다.

37)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3년 자립지원 업무 매뉴얼』, 2023, p.68.

“연락이 안 된 친구들은 분기에 한 번씩은 적어도 연락을 해서 이 친구들과 계속 연락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했었는데 분기까지 했을 때 최종적으로 장기 연락 두절로 분류된 친구들한테는 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우편도 발송을, 그리고 우편 등기 우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꽃이놓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에게 본인 확인이 안 되면 반송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반송되는 사유 중에 주소 불명, 수취불명 이런 것들이 체크되어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고, 저희가 보낸 우편물 보고 회신한 친구들 중에 많은 수가 통신비가 체납되어서 전화 연락이 되지 않았는데, 정말 힘들게 살다가 우편물 보고 저희 센터에 방문을 하고 했어요.”(황다정 팀장, 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2023.4.21.).

이번 현장조사에서 제주는 지역적 특성 때문인지, 아니면 오랜 협업체계 덕분인지, 지자체와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무척 잘되어 있는 모범적 사례를 보여주었다.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는 연락이 안되는 청년이 발생한 경우 청년이 생활했던 보육시설 등에 도움을 요청하여 위기상황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익숙한 담당 선생님, 전담 인력, 그 보육원 시설에 선생님 전화마저도 계속 이제 받지 않고 뭐 예를 들면 한겨울에도 뭐 보일러 끄고 미납 요금은 당연히 있고 일을 안 하니깐, 그래서 계속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 뭐 추위도 춥다고 말을 안 하고 배고파도 배고프다고 말을 안 한 상태에서 이제 걱정되잖아요. 선생님은, 그래서 전화 계속 해도 안 받으면 이제 경찰 대동해서 찾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 그때서야 문 열어준대요. 근데 그렇게 하기 전까지도 일단 먹어야 되니까 그 선생님 말로는 그러더라고요. 그냥 문 앞에 놔두고 이제 놔두고 간다. 이렇게 하면 아무도 없는 거 확인하면 그거 먹을 것만 쓱 들여놓고.”(이설희 사회복지사, 제주특별자치도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2023.5.19.).

또한, 부산광역시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제공해 준 자료에 따르면 장기 연락두절 된 한 청년이 보호종료 5년 중 2개월을 남기고 발견된 사례가 있다. 청년이 생활했던 시설의 아동보호전담요원과 자립지원전담요원이 거주지를 방문하

여 청년의 상황을 점검할 수 있었는데, 사회적으로 단절되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상태를 확인하여 보호종료 5년 이후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하여 그에 연계해 주었다.

청년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다양하고 어려운 사정으로 연락이 닿지 않고 있었다. 이를 감안한다면, 현재의 업무 매뉴얼처럼 문자메시지 등을 남기는 길로는 충분하지 않다.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들의 행방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해서는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지원센터, 지자체, 그리고 경찰과의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2. 가정위탁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자립준비청년들 중 연락두절률이 가장 높은 집단은 가정위탁 자립준비청년들이다. 이들 중 다수가 친인척 또는 조손가정 위탁에서 보호종료된 청년으로 한편으론 자립과정이 원활하기 때문에 자립지원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와 같이 낙관하기만은 어렵다. 현장에서 밝히기 조심스러웠지만, 청년들의 몫으로 나오는 자립지원금이나 자립수당을 위탁가정 보호자인 친인척이 유용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과 기관이 서로 접촉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할머니나 고모 삼촌이 연락을 차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에는 연락을 했어요. 그러다가 할머니가 받아서 개는 더 이상 전화받기 싫어한대요. 연락하지 말라고 애가 싫다고 했다. 그렇게 차단하고 애 연락처를 안 알려주세요. 그럼 저희가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요. 진짜 애가 싫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한가지는 이거 되게 조심스러운데, 디딤씨앗통장과 자립정착금 이거를 본인들이 다 챙겼기 때문에 애들이 알까봐 두려워서 그러시는 분도 있고.”(윤진 팀장, 대전자립지원전담기관, 2023.6.1.).



양육시설의 경우 보호대상아동이 15세가 되면 자립지원전담요원이 보호대상 아동의 자립을 준비한다. 양육시설의 경우 아동 10명 이상 시 1명의 자립지원전담요원이 배치된다. 아동이 100명 초과하면 1명이 추가된다. 가정위탁 지원센터의 직원 배치기준을 보면 센터 당 자립지원전담요원은 1명을 배치하고, 15세 이상 자립지원 대상 아동 수가 100명을 초과할 때에 100명 초과 시 마다 자립지원전담요원 1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있다.<sup>38)</sup> 가정위탁 청년들의 경우 자립지원전담요원과 같은 생활공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아무래도 밀착지원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양육시설과 그룹홈에서 생활했던 자립준비청년과 같이 자신과 유사한 처지의 또래도 만나기 어렵다보니, 지원서비스 등의 정보에 더 어두울 수 있다.

“이제 가정위탁 친구를 만났을 때 저한테 한 얘기가 “선생님 저 같은 애가 전라북도에 많이 있어요?” 라고 한 그 말이 제가 아직까지도 꽂혀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위탁 친구들은 내가 진짜 이 지역에서 이런 상황이 혼자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생활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게 가정위탁 중심으로 자조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너희의 그런 환경이 너뿐만이 아니야 하면서 좀 지지체계를 형성해 주는.”(오찬솔 대리, 전라북도자립지원전담기관, 2023.4.27.).

가정위탁 청년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자조모임 형성 및 안내 등이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가정위탁 지원센터의 역할도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탁가정 지원업무 중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과 교류가 주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보호종료를 앞두고 있는 청년 당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와 정보 제공을 강화함으로써 청년의 자립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청년에게 효용이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38) 보건복지부, 『2023 아동분야 사업안내 1권』, 2023, p.106.

“저희들도 가정 위탁 사후 관리 아이들 대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중간에 차단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애들 만나서 이런 거 교육 받았어? 물어보면은 가정위탁은 위탁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위탁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 자체가 가정으로 가니까 가정위탁 부모를 위해서 하고 부모하고만 소통을 하는 거예요. 거의 여태까지 거의 그랬다가 요즘에 자립준비청년 뭐 이러면서 이제서야 자립하기 직전에 이제 수당 안내 이런 거 따로 애들한테 작년부터 그랬던거 같아요. 저희가 설문했잖아요. 일부러 다 물어봤어요. 이거 안내 받으셨나요? 그러니까 애들이, 안내 못받았어요.”(윤진 팀장, 대전자립지원전담기관, 2023.6.1.).

이를 위해 『자립지원 업무 매뉴얼』에 가정위탁 지원센터의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교육 실시를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가정위탁 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조모임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필요도 있고, 자조모임 운영에 대한 지원 방안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가정위탁 지원센터와 자립지원전담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보호종료 이후 연락이 두절되는 청년의 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역시 강구되어야 한다.

### 3. 경계선 지능 자립준비청년 지원

자립준비청년 중 경계선 지능 청년의 수가 소수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추정만 가능할 뿐 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황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계선 지능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제도 역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에 “지자체 장은 필요한 경우 ADHD, 경계선 지능 아동 등도 아동 2명당 1명의 종사자 배치”를 권고하고 있고,<sup>39)</sup> 경계선 지능 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39) 보건복지부, 『2023 아동분야 사업안내 1권』, 2023, p.238.

자립지원전담인력 1인당 평균 인력이 71명인 상황이고, 통합관리 서비스 대상에 이들이 많이 포함되면, 사후관리 및 사례관리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인력 충원이 경계선 지능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 역량 및 지원 체계 공백의 문제를 모두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와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경계선 지능 자립준비청년을 담당하는 인력을 별도로 배치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립준비 전담인력이 경계선 지능 자립준비청년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갖추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경계선 지능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할 수 있는 자립지원전담인력 대상 정기적인 교육 및 연수가 포함될 수 있다.<sup>40)</sup> 경계선 지능 청년을 고려한 자립지원 활동 가이드북 및 자립지원 업무 매뉴얼의 개편 또는 별도의 지침서 마련 등도 검토할 사안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및 경계선 지능아동 돌봄 종사자에 대한 지원 사업<sup>41)</sup>이 실시되고 있으나, 시설 등에서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상 아동이 적극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있고, 진단 아동 중 사례관리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한다는 점에서 지원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있다. 따라서, 경계선지능 아동 서비스를 확대하고, 보호종료후 자립지원 서비스와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사실 보호되고 있었던 그 기간부터 이 그 경계선 지능 아동들은 조금 이제 자극 계속 해주고 뭔가 계속 훈련해주고 하면 진짜 나아지거든요. 일상생활도 가능한 정도이기 때문에 그 보호 아동 시절 청소년기 시절부터 계속 관리를 해주면 자립 이후에도 조금

40) 아동권리보장원, 『경계선지능 아동 자립기반 사회인지 매뉴얼 개발 연구』, 2021. p.92.

41)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경계선지능 의심아동을 보호중인 경우, 신청에 따라 선별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사례관리서비스를 선정하여 사례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보건복지부, 『2023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 2023, pp.92-93.).

더 원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립 이후에 문제로 그냥 가져가기에는 너무 늦은거죠.”(전숙영 기관장, 전라북도자립지원전담기관, 2023.4.27.).

#### 4. 자립지원전담인력 충원과 합리적인 처우 개선

연락이 닿지 않는 자립준비청년 비율을 지금보다는 감소시키고, 가정위탁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강화하며, 경계선 지능 자립준비 청년에게 촘촘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립지원전담인력이 지금보다는 확충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자립지원전담요원은 영국의 개인상담사(personal advisor) 제도와 견줄 수 있는데, 대략 20명 정도의 청년들의 사례를 관리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sup>42)</sup> 영국의 노팅엄셔(Nottinghamshire) 지역의 경우 1인의 개인상담사가 약 23명의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sup>43)</sup>

전담인력에 대한 처우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 전담인력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는 전담인력의 잦은 이직을 촉발하고 있다. 현장의 전담인력과 자립준비청년은 서로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자립준비 기간 동안 사례관리 선생님이 자주 바뀌는 것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있다.

자립지원전담인력은 국가와 정부가 마련한 지원 제도를 자립준비청년에게 안내하고 이끄는 역할을 한다는 점, 자립준비청년과 직접 소통하고 인간적 신뢰와 믿음을 구축함으로써, 청년들로 하여금 희망적 미래를 설계하고 자립의지를 갖게 한다는 점에서 자립지원의 가장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인정한다면, 의지할 곳 없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보호종료 이후,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립지원전담인력의 지속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42) Barnardo's, 『Neglected Minds』, 2017, p.17.

43) Nottinghamshire County Council, 「Personal Advisor」 (최종 검색일: 2023.7.31.), <<https://nottinghamshire.tal.net/vx/mobile-0/appcentre-ext/brand-2/candidate/so/pm/4pl/1/opp/16686-Personal-Advisor/en-GB>>

“아이들은 사실 진짜 갈구하는 게 사례관리사 선생님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길 원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사례관리사하고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하면 되게 이 한 사례관리사하고 꾸준히 관계를 맺고 싶어 하거든요. 지금은 100명이지만, 사례관리사가 좀 더 충원되어서 내가 소수인원을 만날 수 있다면, 그 친구를 만나줄 수 있을 것 같아요.”(전숙영 기관장, 전라북도자립지원전담기관, 2023.4.27.).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급여를 지급하고, 업무 특성을 고려한 시간 외 수당 등의 지원 체계도 마련하는 등 자립지원전담인력의 근속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 5. 충분한 심리·정서지원 서비스 제공

정부가 마련한 자립준비청년 지원 제도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정서·심리 안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대상자가 아무런 의욕도 의지도 없는 상태라면, 지원 제도를 마련한 것만으로는 이들 삶에 변화를 이루어 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면, 자립준비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비해 심리·정서지원 서비스는 부족하다. 선행 연구들은 부정적 유년기 경험(Adverse Childhood Experiences)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큰 자립준비청년들은 특별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지목하고 있다. 학대, 가정폭력 목격, 부모 사망, 정신질환 및 약물중독 가구구성원과의 생활 경험 등 부정적 유년기 경험은 일생에 걸쳐 여러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하고, 이는 신체적 문제뿐 아니라 정신건강 문제, 그리고 사회적 성취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sup>44)</sup> 그러나 자립준비청

44) Anda Robert F. et al., “The enduring effects of abuse and related adverse experience in childhood”, *European Archives of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 256(3), 2006, pp.174-186.

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제한적이고, 대부분의 청년들은 별다른 개입을 받지 못한 채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보호종료(예정)아동 대상 조사 중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였는가’의 항목에서 응답자의 38.3%는 ‘특별히 대처하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19세 이상인 경우 그 비율은 43%까지 높아졌다.<sup>45)</sup> 보호종료청소년의 경우 연차가 올라갈수록 정신건강 문제에 더 어려움을 겪는다는 영국의 조사자료<sup>46)</sup>를 참고할 때,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의 상황은 악화될 우려가 높다. 실제 우리나라 조사에 따르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보호종료아동의 비율은 50%였고, 보호종료 3년차에는 그 비율이 56.4%로 증가하였다.<sup>47)</sup> 홀로서기를 앞둔 자립준비청년들은 보호종료 시점에서 이전의 상처, 공포, 무력감 등이 되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 관련 연구의 설명이다.<sup>48)</sup>

이에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정서지원을 위해 우선은 현행 10회 무료로 이용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는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지원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용 횟수를 10회기로 제한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를 포함하여 심리상담 등이 필요한 청년들의 지속적인 이용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이와 함께, 자립준비청년의 이용권을 보장하는 것도 시급하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에서 이용자 선정에 있어 자립준비청년이 1순위임을 명시하고 있다.<sup>49)</sup> 그러나 현장에서는 예산소진을 이유로 신청조차

45) 보건복지부,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2020, p.127.

46) 영국 보호종료청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 중 정신건강 상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12%이었다면, 보호종료 이후 1년 이내 그 비율이 24%로 증가하고, 보호종료된 이후 자살시도를 한 비율이 4%인 것으로 조사됨(Kerr, Mark, *A Brief Evidence Summary of the Mental Health Needs of Children Looked After & Care Leavers*, 2020.).

47) 아동권리보장원, 『보호종료(예정)아동 심리정서 실태조사』, 2020, p.58.

48) Charles, Karla, *Leaving and Aftercare Discussion Document and Recommendations*, 2021, p.13.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우선순위 지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용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6. 희망복지지원단의 역할 분담 강화

시군구에는 희망복지지원단이 설치되어 있다.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지역 내 자원 및 방문형서비스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이다.<sup>50)</sup> 희망복지지원단이 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는 지역내 공공 및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하는 사업이다.<sup>51)</sup>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지원전담기관과 희망복지지원단의 상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의 『2023년 자립지원업무 매뉴얼』에도 자립지원전담인력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례관리 동안 복합적, 만성적 문제 등 위기·집중 사례가 발견될 시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로 이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sup>52)</sup>

그러나 희망복지지원단에서 통합사례관리를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립준비청년이 ‘자립의지나 욕구가 없다’는 것이 빈번한 거절 사유인데, ‘위기·집중 사례’라는 자체가 대상자의 자립의지나 욕구를 크게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석연치 않은 사유로 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자립지원전담기관 또는 자립지원전담인력이 의뢰하고 이관한 복합적·만성적 위기 사례를 시군구의 희망복지지원단이 거부하기 위해서는 합리

49) 보건복지부, 『2023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안내』, 2023, p.53.

50) 보건복지부, 『2023년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 2023, p.8.

51) 같은 책, p.21.

52) 같은 책, p.80.

적인 사유를 제시해야 하고, 그에 해당하는 합리적 사유의 예시를 지침을 통해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7. 자립체험 교육 의무실시 규정 마련

가정환경이 아닌 양육시설에서 자란 자립준비청년들이 홀로 생활을 꾸려가는 것은 처음 마주하게 되는 도전이다. 일부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는 청년들의 실생활 경험을 돕기 위해 자립체험관을 운영하고, 짧은 기간 숙식하면서 식사준비, 세탁, 전자제품 사용 등의 체험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7] 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체험관



자료: 직접 촬영(2023.4.21.).

물론 자립체험을 한다고 해서 일상생활기술을 바로 습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전에 자립준비청년 관련 보도 프로그램을 취재하던 한 기자가 ‘전자렌지 사용법을 모르는 청년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의아해 한 적이 있어 이를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에게 확인한 적이 있는데, 담당자는 그 당시 자립체험관에 전자렌지가 배치되지 않아 사용법을 모를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종료를 앞둔 모든 청년들이 자립체험관을 통해 실생활 교육을 받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판단된다. 이에 자립체험관 교육 의무실시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8. 성(性)적 안전에 관한 교육 강화

자립준비청년은 스스로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 이른 나이에 사회에 진출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대학진학률도 또래 청소년에 비해 낮고, 학업 중에도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른 사회생활을 통해 좋은 어른들을 만나 지지를 얻고 자립에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호자 없이 오롯이 홀로 지내는 자립준비 청년임을 알게 된 후, 보살핌과 후원을 미끼로 접근한 후 성적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현장조사에서 만나본 자립지원전담인력도 자립준비청년들이 사람들과의 교류에 있어 취약한 부분이 있음을 걱정하고 있었다.

“이 친구들은 외로움에 취약해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좀 잘해주면 금방 마음을 열어서 관계 맺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이 관계가 굉장히 일방적인 경우들도 많고, 뭔가 갈구하고 매달리는 이런 관계들이 많다보니까, 몸도 마음도 되게 을의 위치에서 늘 관계 맺기를 하더라구요.”(관계자 인터뷰).

특히 여성청년의 경우 일터 및 대인관계에 있어 성(性)적 취약성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기에, 관련 내용들이 자립지원 교육에 적절히 반영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8대 자립준비프로그램의 하나인 ‘자기보호기술’ 프로그램에 성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걸로 충분치 않다. 직장 및 학교 등 구체적인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내용을 보완하여 자립준비청년들이 악의적 의도의 성적 접근 및 착취 의도를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9. 맞춤형 지원 제도의 실질적 구현

자립준비청년과 같이 일괄적 지원 보다 개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위 ‘맞춤형’ 지원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다.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자립지원 업무 매뉴얼’에도 ‘맞춤형 서비스’, ‘맞춤형 자립지원’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청년들의 경험처럼 ‘일자리 경험’ 제도는 기초생계수급과 연계되지 않는다. 정부가 제공하는 구직서비스를 활용하고 상담받던 중에 대졸 학력으로 자격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을 깨닫게 된 자립준비청년의 진학 결정은 ‘부정수급’ 행위로 판정되어, 생계 부양자도 없는 자립준비청년으로부터 수당을 반환해간다. ‘맞춤형’은 여러 다양한 정책적 의미를 내포할 수 있겠으나, 정책 서비스 대상자의 사정과 여건을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면, 이들이 받게 되는 지원 서비스가 원활하게 연계되고 상호보완되어 청년들의 자립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홀로,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부양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을 기준으로 취업준비프로그램의 참여가 기초생계수급 자격을 박탈하지 않도록 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진로를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해 주는 등의 세심한 고려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산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의 지원 사례에서는 성인 연령에 이르지 못한 자립준비청년이 도시가스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보호종료 연령이 24세로 연장되었으나, 각자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성년에 이르지 못한 연령에 보호종료를 원하는 청년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바, 이들이 자립하고자 하였을 때, 법정 권한 부족으로 자립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 안내」 (최종 검색일: 2023.5.12.),  
<<https://www.work.go.kr/youngChallenge/index.do>>
- 관계부처 합동,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 2021.7.13.
- 관계부처 합동,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2022.11.17.
-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2』, 2022.
- 국민취업지원제도, 「의무와 제재」 (최종 검색일: 2023.8.2.),  
<<https://www.kua.go.kr/uapaa010/selectBassDutyVoltRst.do>>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최종 검색일: 2023.8.2.),  
<<https://www.kua.go.kr/uapaa010/selectSporCn.do>>
- 김지연·백혜정·김미향, 『2022년 시설퇴소청년 생활실태조사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 대전자립지원전담기관, 『대전광역시자립지원전담기관 사업보고서』, 2022.
- 보건복지부,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2020.
- 보건복지부, 『2023 아동분야 사업안내 1권』, 2023.
- 보건복지부, 『2023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 2023.
- 보건복지부, 『2023년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안내』, 2023.
- 보건복지부, 『2023년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 2023.
- 보건복지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3.8.2.).
-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1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 2022.
-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3년 자립지원 업무 매뉴얼』, 2023.
- 아동권리보장원,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3.4.8.).
- 아동권리보장원, 『경계선지능 아동 자립기반 사회인지 매뉴얼 개발 연구』, 2021.
- 아동권리보장원, 『보호종료(예정)아동 심리정서 실태조사』, 2020.

허민숙, 『보호종료청소년 자립지원 방안: 아동발달지원계획(CDA)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과제』, 『이슈와 논점』, 제1776호, 국회입법조사처, 2020.

허민숙, 『보호종료청소년 자립지원 방안』, 『NARS 입법·정책』, 제8호, 국회입법조사처, 2018.

허민숙, 『자립지원의 공백: 보호종료청소년을 위한 개인 자립지원 상담사도입 과제』, 『NARS 현안분석』, 제192호, 국회입법조사처, 2021.

e-나라지표, 『취학률 및 진학률』 (최종 검색일: 2023.4.5.),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20](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20)>

Anda Robert F. et al., “The enduring effects of abuse and related adverse experience in childhood”, *European Archives of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 256(3), 2006.

Barnardo's, 『Neglected Minds』, 2017.

Charles, Karla, *Leaving and Aftercare Discussion Document and Recommendations*, 2021.

Kerr, Mark, *A Brief Evidence Summary of the Mental Health Needs of Children Looked After & Care Leavers*, 2020.

Nottinghamshire County Council, 『Personal Advisor』 (최종 검색일: 2023.7.31.),  
<<https://nottinghamshire.tal.net/vx/mobile-0/appcentre-ext/brand-2/candidate/so/pm/4/pl/1/opp/16686-Personal-Advisor/en-GB>>

## NARS 현장실태조사 발간 일람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1호	온라인서비스 피해상담·지원 실태와 개선과제 '온라인피해365센터'를 중심으로	2023.08.25.	김 여 라



## NARS 현장실태조사 제2호

---

발 간 일 2023년 9월 1일  
발 행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편 집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발 행 처 국회입법조사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6788·4720  
인 쇄 경성문화사 (TEL 02·786·2999)

---

1. 이 책자를 허가 받지 않고 복제하거나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2.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필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문(全文)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www.nars.go.kr>) '연구보고서'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4.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http://open.assembly.go.kr))-보고서·발간물>에서 국회의 각 입법지원 조직에서 발간하는 보고서와 발간물 원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ISSN 2983-4066  
발간등록번호 31-9735042-002036-14

© 국회입법조사처, 2023

## NARS 현장실태조사

정부정책의 전달체계와 성과에 대한  
현장실태를 조사하고 평가하는 보고서로  
수시 발간되고 있습니다.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입법조사처)  
Tel. 02-6788-4510(代) [www.nars.go.kr](http://www.nars.go.kr)



발간등록번호 31-9735042-002036-14

ISSN 2983-4066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